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42호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창원시 의회의장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반영하여, 인력·장비·기술을 갖춘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민간 대행의 성격과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의 성격을 분명히 밝힘.(안 제5조제2항)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y0810@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1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의 원 : 최정훈 · 김경수 · 김경희 · 김영록 · 김우진  
박승엽 · 서명일 · 안상우 · 이정희 ·  
이천수 의원(10명)

## 1. 제안이유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반영하여, 인력·장비·기술을 갖춘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민간 대행의 성격과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의 성격을 분명히 밝힘.(안 제5조제2항)

## 3. 참고사항

- 신 · 구조문대비표
- 관계 법령
- 현행 조례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을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력·장비 등을”을 “다음 각 호를 모두”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을”을 “처리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의 대행계약은”을 “처리의 대행계약은 단순한 노무제공에 대한 용역이 아닌 그 이상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필요로 하는 용역으로서”로, “하며”를 “하고”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중 대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
2. 제1호의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대행계약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덩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3) 계량시설 1식 이상
-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 가) 시설 및 장비
    -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계량시설 1식 이상
    -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 1) 시설 및 장비
    - 가) 공통시설 및 장비
      - (1) 실험실
      -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 (6) 계량시설 1식 이상
      -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개별시설
      -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 1) 시설 및 장비
    - 가) 공통시설 및 장비
      -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라)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시설

-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 시설
-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나)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다)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폐기물[별표 4의2 제2호가목1)·2) 또는 같은 호 나목1)·2)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 압출· 성형· 주조· 파쇄· 분쇄· 탈피· 절단· 탈수· 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 퇴비화· 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 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차시설 : 20세제곱미터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
용해시설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분리시설	용해 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기름성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원심분리시설	유지 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합계 15kW 이상인 것 1식 이상

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폐기물의 파쇄· 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재활용하는 경우

- ① 분리시설: 냉매물질과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냉매물질의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 ③ 선별시설: 철과 비철을 90퍼센트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시설
- ④ 냉매물질 보관시설: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를 함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서 회수되는 냉매물질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탁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 ①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 ① 분리시설: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
- ② 형광물질 보관시설: 형광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밀폐용기

(라)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경우

- ① 파쇄시설: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분리한 인쇄회로기판 등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할 수 있는 시설

(마)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 ①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

다)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 고형폐기물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1) 실험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종이류, 섬유류 또는 접착제·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경우

(1)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2)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다만,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만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 (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 리튬이차전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 (나)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 가)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 (1)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파쇄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 (나) 압축시설 : 폐종이를 11.25kW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 (2)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 (나)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 (1)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 (2)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설	기준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회저어 섞는 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3)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시설	기준
유량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2) 개별시설: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혼합시설: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 재활용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계량시설 1식 이상

(2) 파쇄·분쇄·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분쇄·절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

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나) 재활용시설 1식 이상

다)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비 고

1.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능력 중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업종 또는 영업대상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춘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실험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 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비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 중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의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대형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말한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0.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11. 별표 5 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및 사무실(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에 따른 장비 및 사무실(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1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제10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삭제
3. “대형폐기물”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포함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3.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4.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4조(시민의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내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적치·방치된 폐기물 수거·처리
  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방치된 기구·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수거·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가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중심상업지역 및 전통시장과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생기는 경우

나. 각종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 노면 청소차량 등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도로 위 동물의 사체 수거 및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다.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수송·운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공동주택 등 지정장소에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차량 진출입이 쉬운 장소에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보관시설을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단독주택과 사업장은 문 앞, 공동주택은 지정장소에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고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마대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성상별로 해당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시장이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따른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7조의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정 장소와 지정 수거일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당사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며, 시와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 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감시원을 둘 수 있으며, 감시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정하여 제작·공급·판매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 읍·면·동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용봉투는 공공쓰레기 수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④ 판매소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은 때
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때
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때
4. 불법제작 유통된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3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13조(종량제봉투 제작, 공급, 판매업소 확인)**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공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공급대행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종량제봉투의 판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대행업체 대표가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 센터 등이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할 경우 무상 수거 또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3. 적정 판매 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통·리·반장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7조 삭제**